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(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문기관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특허 관련 대리 업무 등 변리사 업무를 제한 중이나,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분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임직원뿐만 아니라, 지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없도록 규정(안 제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

대통령령 제 호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“임·직원”을 “임·직원 및 지분(주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가진 자”로, “없을 것”을 “없으며, 지분을 가진 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없을 것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
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
는 제외한다)가 없을 것

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----- 없으며, 지분을
가진 자 중 같은 법 제2조에
따른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
없을 것

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심사기획과	
연 락 처	042-481-5395